

【별첨1】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

【필독사항】

본 사업은 B the B 공간 콘텐츠의 확산 + 민간 유통 역량의 결합을 목표로 하는 공공-민간 공동사업형 사업입니다. **SBA는 콘텐츠 기반의 초기 공간 구축 비용에 대해 최대 5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민간 파트너는 매장 운영, 인건비, 임대료 등 고정 운영비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.**

- 하기 내용은 신청 전, 파트너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증빙서류 예시이며, 세부적인 가이드는 선정 확정 후 협약 체결 시 별도 제공 예정
- 사업 종료 후, 세부 예산서에 따라 SBA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정산을 실시하며, 각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
- 정산대상 : SBA지원금 및 협약기관이 현물로 계상한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
-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집행 금액으로 인정※ 회계법인 검토 서비스 비용은 SBA가 부담
- 파트너사는 SBA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제출하여야 함
- SBA/회계법인 검토 시, 보완 요청 자료가 있을 수 있음
- 파트너사의 사업 추가 제안 사항에 따라 상기 내용 외 별도의 지출 항목이 생기거나, 기존 제출한 예산계획과 상이하게 사용할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승인 필수

○ 집행 방식별 증빙서류

※ 단순 현금거래 인정 불가

집행방식	증빙서류
세금계산서	견적서 및 계약서, 세금계산서 (전자세금계산서 포함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이체확인증
신용카드	견적서 및 계약서, 신용카드 영수증(카드매출전표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
해외 송금	견적서 및 계약서, 해외 송금 증빙(해외송금확인서, 외화송금증 등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

○ SBA 사업비 집행 가능 항목 및 기준

구분	세부 항목	집행 기준 및 유의사항
공간 콘텐츠 조성비	인테리어 시공, 구조물 제작, 전시 설치	- B the B 컨셉존을 구성하는 비용
체험 콘텐츠 운영비	뷰티테크/패션테크 장비 설치, 체험 요소 운영 등	- 체험 콘텐츠로서의 기능 명시
브랜딩/디자인 제작비	로고/간판, 콘텐츠 패널, 포토존 등	- SBA/B the B 공동 브랜딩 요소 포함 필수
홍보 콘텐츠 제작비	홍보 영상, SNS 콘텐츠, 사진/영상 촬영	- 캠페인 목적 및 도달 KPI 연계
소형 장비 임차	AR 키오스크, 디지털 사이니지 등 단기 임차	- 고정자산 취득 불가

○ 집행 불가 항목 [SBA 사업비 집행불가, 민간부담금으로 집행 가능]

세부 내용

- 매장 월 임대료, 관리비, 공공요금 등 고정 운영경비
- 직원 급여, 고용보험 등 상시 운영 인건비
- 식음료, 다과, 식비 등 복리후생성 지출
- 간이영수증, 개인 신용카드 결제 등 인증 불가능 영수증
- 노트북, 카메라, 컴퓨터 등 범용성 장비 구입
- 선정 전 집행비용 또는 철거·원상복구비용

○ 민간부담금 기준

- SBA 지원금과 동일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 부담 필수
예: SBA 5억 지원 시 → 민간부담 5억 이상
- 현물 인정 기준
 - 자체 보유 공간 제공 → 임대 시세 기준으로 환산
 - 자체 인력 투입 → 급여 명세서 기준으로 산정
 - 기존 장비·비품 활용 → 감가상각 반영

[별첨2] 민간협력사업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세부 기준

□ 사업비의 구성 및 계상기준

〈 ‘서울경제진흥원 민간협력사업 집행기준’ 사업비의 구성 및 계상기준 〉

- “민간부담금”은 인건비만으로 구성될 수 없으며, 협약기관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현물 또는 현금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. 단,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위탁형 협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 - “민간부담금” 중 인건비는 현물로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상하며, 사업담당자는 참여하는 인력의 수준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이를 살펴야 한다.
 - “민간부담금” 중 장비, 부동산 등을 현물로 계상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담당자는 인정기준 및 계상방법 및 정산방법 등을 사전에 명시하여 안내해야 한다.
 - “민간부담금” 중 별도의 계상기준이 없는 무형적 자산의 경우 시장조사를 통한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며, 사업담당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.
 - 그 외 민간부담금의 구성 및 계상기준은 개별 민간협력사업의 목적 및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별 사업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‘인건비’는 현물로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참고하여 계상한다. 단, 행정안전부 인건비 기준 단가는 참여율 50%를 기준을 산정된 것이므로, 협약기관의 인건비는 협약 기관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따라 1인당 월 임금의 100% 이내에서 증감하여 계상할 수 있다.

〈 2025년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〉

(아래 표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)

등급	월 임금
책임 연구원	월 3,705,904원
연구원	월 2,841,638원
연구보조원	월 1,899,539원
보조원	월 1,424,702원

- 별도의 계상 기준이 없는 무형적 자산에 해당하는 입점 지원, 홍보마케팅 지원비, 기업지원비 등은 협약기관별 서비스 비용을 고려하여 계상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. 단, 계상 항목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 보고가 가능하고, 사업 운영 목적과 부합하는 비용에 한해 인정한다.

- ‘기타운영비’는 ‘인건비’, ‘기업지원비’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으로 계상한다.
- 그 외 사업비 구성 및 계상 기준은 협약 추진 목적 및 협약 대상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□ 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

- 사업비 집행의 책임은 사업비를 집행한 당사자로 하며, 공통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각자 집행한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.
- 사업비를 지급받는 대상은 별도의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하며, 해당 통장을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- “민간지원금”을 수령하는 기관은 사업비 전용 통장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SBA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협약기관의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, 협약기관의 다른 통장으로 지출한 이후 증빙을 통해 현물로 인정받아야 한다.
- “민간부담금” 중 인건비의 산정은 타 사업과 합산하여 참여율 100%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사업 담당자는 이를 유효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- 사업비 지출은 협약기관의 법인명의 카드 및 계좌를 통한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, 사업비 집행은 SBA와 협의된 사업 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.

□ 사업비 정산 기준

- 사업비의 정산은 '서울경제진흥원 민간협력사업 정산 일반기준'을 따른다.

〈 '서울경제진흥원 민간협력사업 집행기준' 민간협력사업 정산 일반 기준 〉

- 사업종료시 협약기관은 사업비 집행내역을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전용통장의 이체내역과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법인은 서울경제진흥원 경영지원팀에서 선정한 SBA 지원사업비 정산 및 평가 회계법인으로 정한다.
 - 정산은 협약기관이 현물로 계상한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, 사업비를 집행한 기관에서 정산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.
 - 사업담당자는 사업비 집행기관이 제출한 정산내역 중 별도의 증빙이 없거나 협약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보완요청하고, 보완이 되지 않을 시 이를 불인정하여야 한다.
 - 협약기관은 현물로 계상한 내역 중 인건비에 대하여서는 개별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과 이체내역으로 증빙하여 정산한다.
 - 협약기관은 현물로 계상한 내역 중 무형적 자산에 대하여서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정산을 갈음하고, 사업담당자는 별도의 증빙이 없거나 협약의 내용과 무관한 사용내역에 관해서는 불인정하여야 한다.
 - 협약기관은 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집행 이전에 서울경제진흥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사업담당자는 이를 불인정하여야 한다.
 - 사업담당자는 정산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집행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.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는 비영리기관, 해외기관 또는 개별 협약의 특수성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 - 협약기관은 활동비 및 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 민간협력사업의 수행 연관성을 소명하여야 하며, 사업담당자는 소명되지 않는 활동비 및 추진비는 불인정하여야 한다.
-
- 사업담당자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를 중간 정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담당자는 중간 정산의 시기를 사전에 협약서에 명시하거나 협약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.
 - SBA는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, 기준이나 협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협약기관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